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.

- (6)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다.
- (7)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항시 대피로를 계획·확보하고, 대피로에는 정전상태에서 도 식별이 가능한 대피로 안내용 표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연면적이 400㎡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화재 발생 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, 초기소화에 실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 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.

## 5.2 취약시기 특성별 재해유형에 따른 안전조치

## 5.2.1 해빙기

## (1) 토사면 무너짐 재해예방

- (가) 굴착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나)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 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.
  - (다) 절·성토 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마루 측 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를 정비하여야 한다.
  - (라) 굴착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고, 토사사면 변위의 진행성이 관찰 되는 경우에는 사면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.